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03

발의연월일: 2021. 3. 22.

발 의 자: 김정호·강선우·김윤덕

박찬대 • 박홍근 • 양경숙

어기구・윤후덕・이병훈

정춘숙 · 정태호 · 허종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,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.

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5년간 긴급경영안정계획 시행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,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위한 긴급자금이 투입된 바 있음.

그러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·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, 지원 대상

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.

이에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 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, 대상 지역 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중 "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"을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	제61조(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
수립·시행) ① 중소벤처기업부	수립·시행) ①
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의 발생,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	
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	
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	
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	
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	
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	
있다.	
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